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353 살인

피 고 인 유○○ (000000-0000000), ○○○○

주거 이천시 ○○○ ○○○ ○○○

등록기준지 이천시 ○○○ ○○○ ○○○

검 사 김민아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최원영, 류판석

판 결 선 고 2011.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 소유의 ○○○○ ○○ 부지를 300 억 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일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

해지되었다가, 2010. 8. 중순경 ○○인수사업에 관심이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이○○(남, 00세)로부터 그룹 회장 등과 인맥이 있어 투자금을 마련할 테니 공동으로 위 ○○부지 매입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형인 이○○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등 함께 투자금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부지 매입자금 조달에 실패함으로써 매입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이○○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중 9억 6,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약 1억 원 정도의 손실까지 보게 되자 사업 실패 및 투자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주식투자금을 조달한 피해자로부터 '○○ 인수 건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듣게 되어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1. 3. 31. 09:30경 이천시 ○○○ ○○○ ○○ ○○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방용품 매장에서 생선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8cm, 전체길이 약 42cm)를 8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00○0000호 ○○○ 승용차의 운전석 매트 밑에 감추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10:10경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톤페이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1:10경 서울 강남구 ○ ○○ ○○○-○○ ○○○○○ 호프집에 이르러 사채 알선업자인 김○○ 등을 만나 자금 마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1:20경 혼자 주차장으로 나가 승용차 매트 밑에 숨겨 둔 생선회칼을 꺼내어 허리춤에 숨겨 들어온 후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척 피해자의 뒤를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11:25경 김○○ 등과 대화를 하며 방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 칼로 33회 찔러 간파 폐 등에 대한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황○○, 조○○, 이○○, 문○○, 홍○○, 강○○, 권○○, 이○○의 각 법정진술
1. 유○, 김○○, 홍○○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 권○○의 각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1. 수사보고(이천○○○○ ○○ 인수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검증조서(현장검증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주식대금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CD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홍○○, 윤○○, 박○○ 등과 통화), 김○○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 통화내역 검토 및 통화상대 조회 등)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이 범행 당일 착-발신한 통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유○○ 명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 유○○, 유○○, 윤○○, 김○○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저축은행 종합예금 거래내역, ○○저축은행 대출금 이자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이른 아침부터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한 후, 범행에 사용된 생선회칼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천시 ○○○ 일대 주방용품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생선회칼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숨겨놓은 채 피해자를 만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범행 현장 술집의 화장실에서 범행의 결의를 가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동생인 유○○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식투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에 있는 주식투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범행 발생 당일 아침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도중 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선회칼을 구입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나, 위 ○○부지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권○○의 전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날 길이가 약 28cm에 이르는 생선회칼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준비한 생선회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1회 찌른 후 저항하던 피해자를 추가로 31회나 더 찔렀고, 나아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력을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으로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을 바라보며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1회 더 찌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법익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죄질이 극도로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지금까지 보인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과연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매입 사업의 진행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사업 실패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자 위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폭력 및 협박을 당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이러한 피해자의 폭력 및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

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의 처 강○○와 피해자 사
이의 통화내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아들의 사진 등
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증인 강○○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
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
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2년 이
상 25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인 점{살인범죄군. 2. 보통동기살인, 특별가중영역(특
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참작하여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8년 : 2명

징역 20년 : 3명

징역 23년 : 4명

재판장 판사 정영훈 _____

판사 배정현 _____

판사 도영오 _____